성범죄 무고에 대한 형량 강화가 정말 여성들에게 불리한가?

로자

현실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고죄는 그 죄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라인 모욕죄마냥 쉽게 입증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기호를 기준으로 전단이 범죄의 구성요건이고 후단이 그 효과로서의 형벌입니다.)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 성립되면 위법하다는 추정을 받게되는데 이 추정력을깨는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책임"을 파악합니다.

이 책임부분에서 "심신미약" 또는 "촉법소년" 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신이 아닌 타인을 상대로
-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3.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 4.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성요건에서 4번 때문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이 객관적 허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허위를 의미합니다. 즉 제가 만약에 로붕이랑 단둘이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후에 제가 로붕이가 저를 상대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로 고소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 진실로 존재하는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고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위사실로 인식하고서 고의로 고소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그 당사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불만한 증거와 정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고소당하고서 그것이 무죄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흔히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곧 상대를 무고로 고소해서 처벌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죄가 나온 원인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해서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증거가 불충분한 범죄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죄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일관적으로 말만 그럴싸하게 해도 성범죄 유죄 뜰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경우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간접 및 정황증거라도 있었던 경우입니다. (참고로 사람도 증거입니다.)

정리해서,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처음부터 부족한만큼 진실은 당사자 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로 고소한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소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실제 성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고 그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로 고소를 당한다면

사법기관이 봤을 때 실제로 피해자 주장대로 범죄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무죄가 나왔다고 고소인에 대해서 무조건 무고 죄 유죄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은 증거조작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만큼 무고의 고의를 단편적으로 직접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몇년째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존재하죠.

"성범죄 무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라는 의미라면, 이 또한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무고는 공식적으로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케이스로 존재하는 이 문제 때문에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것은 입법낭비에 해당하며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무고 형량을 강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7조의 조문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제제를 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빵 하나 훔친 사람의 죄가 사람을 살해한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빵 하나 훔친 사람에게는 가벼운 형을 집행해야 하고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중한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고의 형량을 강화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죄보다 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들의 법정형 또한 상승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이 1개월이고 살인죄의 법정형이 1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무고죄의 법정형을 1년으로 강화화한다면 살인죄의 법정형이 1년인데 이렇게 되면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죠?

이를 "형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살인죄의 법정형 또한 상향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정형에 대한 법률개정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통계적으로 강력범죄의 경우 남성의 우범률이 압도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편입니다.

즉 성범죄 무고 강화를 주장해서 만약 실제로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들이 받게되는 형량 또한 증가합니다.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인식하는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차피 성범죄 무고 비율도 극히 적고 무고죄 입증이 거의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무고의 형을 강화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남성들이 지게되는 형량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반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무고를 강화하면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경우는 사실 법의 무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할 때 무고죄를 언급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무고죄 성립 원리를 제대로 모른다면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서 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가해자의 협박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아치 같은 남성들이 유독 여성의 백치미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되도 않는 무고죄 협박도 그게 먹힐만한 상대에게 해야 먹히니까요.)

ps.

이 글을 보고서 어쩌면 성범죄무고강화를 주장하던 남성들이 무고죄 인정을 위한 구성요건을 고치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을 할지 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고비율이 기껏 0.5% 밖에 되지 않는 성범죄 하나 때문에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도입해야할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악을 자유롭게 행할 자유를 위해 "법을 고쳐줘" 라고 하지 마세요.